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2호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21(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강북구고시 제2015-274(2015.11.06.), 강북구고시 제2018-44(2018.03.23.), 강북구고시 제2018-145(2018.10.26.)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20일
서울특별시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기정	변경	변경 후	
변 경	미아동3-11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10,327.0	증) 8.0	10,335.0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는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을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총 계		10,327.0	증) 8.0	10,335.0	100.0	
정 비 기 반 시 설 등	소 계	1,123.0	-	1,123.0	10.9	
	도 로	1,123.0	-	1,123.0	10.9	
획 지	소 계	9,204.0	증) 8.0	9,212.0	89.1	
	획지1	8,812.0	증) 8.0	8,820.0	85.3	공동주택
	획지2	392.0	-	392.0	3.8	사회복지시설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327.00	증) 8.00	10,335.0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327.00	증) 8.00	10,335.00	100.0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6	특수 도로	21	미아동	미아동	보행자 전용 도로	-	14.06.19 (서고 2014 -221호)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9	미아동	미아동	일반 도로	-	14.06.19 (서고 2014 -221호)	-
기정	중로	2	117	12~15	집산 도로	4,735 (166)	하월곡동	번동	일반 도로	-	63.12.24 (건고738호)	오패산로

※ ()는 구역 내 사항임

나.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미아동 3-183일대	392.0	-	392.0	14.06.19 (서고 2014 -221호)	건축물 설치 후 기부채납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구분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기준(㎡)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관리사무소	획지1	233.53	-	233.53	
기정	근린생활시설	획지1	865.95	-	865.95	
기정	작은도서관	획지1	187.78	-	187.78	
변경	보육시설	획지1	214.91	증) 4.22	219.13	
기정	경로당	획지1	144.46	-	144.46	
변경	어린이놀이터	획지1	87.00	증) 28.00	115.00	
폐지	입주자집회소	획지1	227.15	감) 227.15	-	
신설	주민운동시설	획지1	-	증) 227.15	227.15	

※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건축법」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계	존치	개수	철거 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327.0	-	-	미아동 3-111 번지 일대	70	-	-	70	-	
변경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335.0 (증 8.0)	-	-							

7. 건축시설계획

■ 획지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한 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최고층수 (평균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327.0	획지1	8,812.0	미아동 3-111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 대시설	31.18% 이하	206.42% 이하	최고11층이하 (평균10층이하)																																																			
			획지2	392.0	미아동 3-183 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변경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335.0 (증 8.0)	획지1	8,820.0 (증 8.0)	미아동 3-111 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 대시설	31.58% 이하	213.41% 이하	최고11층이하 (평균10층이하)																																																			
			획지2	392.0	미아동 3-183 번지 일대	사회복지시설	관계법령에 따름																																																					
■ 전체 건립규모 및 비율 <table><tr><th colspan="3">건립규모</th><th>기정</th><th>증감</th><th>변경</th><th>비율(%)</th></tr><tr><td colspan="3">합 계</td><td>203</td><td>-</td><td>203</td><td>100.00</td></tr><tr><td rowspan="9">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rowspan="3">85㎡ 이하</td><td rowspan="3">60㎡이하</td><td>55㎡</td><td>4</td><td>-</td><td>1.97</td></tr><tr><td>59㎡-A</td><td>52</td><td>-</td><td>25.62</td></tr><tr><td>59㎡-B</td><td>74</td><td>-</td><td>36.45</td></tr><tr><td rowspan="5">60㎡초과~ 85㎡이하</td><td>75㎡</td><td>40</td><td>-</td><td>19.70</td></tr><tr><td>84㎡-A</td><td>7</td><td>-</td><td>3.45</td></tr><tr><td>84㎡-B</td><td>7</td><td>-</td><td>3.45</td></tr><tr><td>84㎡-C</td><td>13</td><td>-</td><td>6.40</td></tr><tr><td>84㎡-D</td><td>6</td><td>-</td><td>2.96</td></tr></table> - 85㎡ 이하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100.0%											건립규모			기정	증감	변경	비율(%)	합 계			203	-	203	100.0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85㎡ 이하	60㎡이하	55㎡	4	-	1.97	59㎡-A	52	-	25.62	59㎡-B	74	-	36.45	60㎡초과~ 85㎡이하	75㎡	40	-	19.70	84㎡-A	7	-	3.45	84㎡-B	7	-	3.45	84㎡-C	13	-	6.40	84㎡-D	6	-	2.96
건립규모			기정	증감	변경	비율(%)																																																						
합 계			203	-	203	100.0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85㎡ 이하	60㎡이하	55㎡	4	-	1.97																																																						
			59㎡-A	52	-	25.62																																																						
			59㎡-B	74	-	36.45																																																						
	60㎡초과~ 85㎡이하	75㎡	40	-	19.70																																																							
		84㎡-A	7	-	3.45																																																							
		84㎡-B	7	-	3.45																																																							
		84㎡-C	13	-	6.40																																																							
		84㎡-D	6	-	2.96																																																							
	심의완화 사항		■ 종상향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층수완화 : 평균층수 10층이하, 최고층수 11층이하																																																									
건축물의 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		■ 획지1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면부 3m 건축한계선 계획																																																										

■ 용적률 계획

구분		산정내용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0,327.0	8,812.0	1,515.0	576.9	398.0	-
기정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515.0㎡ + 576.9㎡ - 398.0㎡ = 1,693.9㎡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도로(1,123.0㎡), 사회복지시설(392㎡)					
	공공시설설치환산 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551,332,640 / 2,689,088 = 576.9㎡ * 건축비 : 2,134,000 원/㎡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 설치비용 : 1,551,332,640 원 (건축비 2,134,000 × 건축면적 726.97) * 부지가액 : 2,689,088 원/㎡ (개별공시지가 1,344,544 원/㎡ 의 2배)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70%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허용 or 기준용적률 × (1 + 1.3 × α) = 170% × (1 + 1.3 × 0.2057) = 215.46% * α = 1,693.9㎡ / (8,812.0㎡ - 576.9㎡) = 0.2057 • 정비계획용적률 = 206.42% 이하					

구 분		산 정 내 용					
변 경	토지이용 계획	계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등)	신설 정비기반시설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10,335.0	8,820.0	1,515.0	576.9	398.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공공시설설치 환산부지면적 - 새로이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택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1,515.0\text{㎡} + 576.9\text{㎡} - 398.0\text{㎡} = 1,693.9\text{㎡}$ *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 면적 : 도로(1,123.0㎡), 사회복지시설(392㎡)					
	공공시설설치환산 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 $1,551,332,640 / 2,689,088 = 576.9\text{㎡}$ * 건축비 : 2,134,000 원/㎡ (2015년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 * 설치비용 : 1,551,332,640 원 (건축비 2,134,000 × 건축면적 726.97) * 부지가액 : 2,689,088 원/㎡ (개별공시지가 1,344,544 원/㎡ 의 2배)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170%					
상 한 용 적 률	상한 용적률	• 상한용적률 $= \text{허용 or 기준용적률} \times (1 + 1.3 \times \alpha)$ $= 170\% \times (1 + 1.3 \times 0.2055) = 215.41\%$ * $\alpha = 1,693.9\text{㎡} / (8,820.0\text{㎡} - 576.9\text{㎡}) = 0.2055$ • 정비계획용적률 = 213.41% 이하					

8.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과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옥상설비 등의 시각적인 노출을 지양하고, 건축물 부속 구조물이나 설비 등은 건축물 디자인 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 건축물의 재질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	-
환경보전	•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인 녹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공원을 신설 및 추가 확보하여 조경녹 지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 •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시설은 주변 녹지체계를 고려하여 계획 • 계획대상지내 공원·녹지 계획을 수립하고 단지내 조경녹지 등 연계 녹지계획을 수립함으로 써 주변에 형성된 녹지 및 생태지역과의 단절을 예방	-
재난방지	• 화재 : 단지내 소방도로 확보 및 소화전 설치,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금지 • 수해 : 사업지구내 조경면적 및 투수성포장재 사용으로 토양포장률 및 우수유출량 감소 • 교통 : 진출입 동선의 합리화, 보차분리 등을 통해 사고발생 방지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사택내부 및 건축물 주변으로 조경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수목이 체계적으로 관 리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 시, 이식하여 재활용 가능한 수목은 존재하지 않음	-

나. 환경성 검토결과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자 연 환 경	1. 생태면적율	30%	●기 시가지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사업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 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률 30%이상 확보 만족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대상지내 공원 및 단지 내 조경 등 계획에 반영
	3. 비오톱 및 동식물상	4등급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대상지 내 공원 및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 향상
	4.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사업시행 시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5. 물순환	우수관리	●기존 빗물관리시설 없음.	●사업대상지내 충분한 조경녹지 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검토항목	계획에 반영사항
생활환경	1. 일조	-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2.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건축물 계획 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3.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4. 경관	Skyline보전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가로녹지율	●주변지역과 연계한 층고 계획
추가	5.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공동주택 주변 조경식재 계획 → 가로녹지율 증가
	6.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7.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대상지 내부에 공개공지 및 단지 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추가	6. 폐기물	공사 시 및 운영 시 폐기물 발생 예상	●강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7. 소음진동	공사 시 소음·진동영향이 예상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9.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존	계획	증	
기정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획에 따름 (주택재건축)	구역지정 후 4년 이내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82	203	121	-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남서측 500m 내 송중초등학교 위치, 대상지 북서측 500m 화계초등학교 위치	●향후 사업 시 송중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 단지를 통하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통학 및 보행을 위한 단지 내 보행환경 및 보행안전 확보 계획 수립	-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치	면적(㎡)			구성비 (%)	비고 (변경사유 등 기재)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북구 미아동 3-111번지 일대	10,327.0	증) 8.0	10,335.0	100.0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변경사유 등 기 재)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0,327.0	증) 8.0	10,335.0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327.0	증) 8.0	10,335.0	100.0	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	6		특수 도로	21	미아동	미아동	보행자 전용 도로	-	14.06.19 (서고 2014 -221호)	-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9	미아동	미아동	일반 도로	-	14.06.19 (서고 2014 -221호)	-
기정	중로	2	117	12~15		집산 도로	4,735 (166)	하월곡동	변동	일반 도로	-	63.12.24 (건고738호)	오패산로

2)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미아동 3-183일대	392.0	-	392.0	14.06.19 (서고 2014 -221호)	건축물 설치 후 기부채납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면 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획 지	소 계	9,204.0	증) 8.0	9,212.0	89.1	-
	획지1	8,812.0	증) 8.0	8,820.0	85.3	공동주택
	획지2	392.0	-	392.0	3.8	사회복지시설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가 구	용 도	비 고
기정	허용용도	획지1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
기정	허용용도	획지2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 분	지 역	건폐율	비 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나)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상한용적률	법정상한용적률		
기정	170% 이하	190% 이하	250% 이하	－	정비계획	허용용적률 170% 상한용적률 215.41% 법정상한용적률 －

다) 높이 계획

구 분	지 역	높이기준	비 고
기정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11층 이하 (평균 10층 이하)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 준수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 획지1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면부 3m 후퇴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위치	계 획 내 용
공공보행통로	■ 획지1	■ 옥외 EVL.을 통한 동서간 연결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도로확보	■ 대상지 북측	■ 대상지 동서간 보행 및 차량 연결도로 확보
보행동선	■ 대상지 북측	■ 원활한 보행흐름을 위해 대상지 북측에 도로 폭6m 확보
	■ 대상지 동측	■ 보행자 전용 출입구 설치
차량동선	■ 대상지 서측	■ 차량진출입구 1개소 설치
	■ 단지 내부	■ 법정주차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되, 8/10 이상을 지하주차장으로 유도하여 지상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환경관리계획

검토항목	목표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 반영사항
자연환경	1. 생태면적율	30%	●기 시가화 지역으로 대부분 포장상태 지역 ●사업대상지내 충분한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 녹지 조성하여 생태면적율 30%이상 확보 만족
	2. 녹지네트워크	녹지평가 지표	●기존 시가지로 주변 녹지여건을 고려하여 조경녹지 계획 ●대상지내 공원 및 단지 내 조경 등 계획에 반영
	3. 비오톱 및 동식물상	4등급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 개별비오톱 제외등급으로 조사됨 ●대상지내 공원 및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톱 기능(도시생태기능 복원 및 강화)향상
	4.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사업시행시 건축물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발생 사토처리 대책 수립
	5. 물순환	우수관리	●기존 빗물관리시설 없음. ●사업대상지내 충분한 조경녹지 계획
생활환경	1. 일조	-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일조권 피해 없음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건축 계획
	2. 바람 및 미기후	바람길 확보	●주풍향 고려 및 통경축 확보 ●건축물 계획시 주풍향(서북서풍) 고려 계획
	3. 에너지	에너지절약계획 수립	●향후 에너지사용량 추정 ●에너지 절약 설비 및 계획 고려 ●에너지절약형 설비기기 도입 및 청정연료 사용
	4. 경관	Skyline보전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 ●주변지역과 연계한 층고 계획
		가로녹지율	●주거시설로 조성되어 있음 ●공동주택 주변 조경식재 계획 → 가로녹지율 증가
	5. 휴식 및 여가 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주변에 휴식·여가공간 부족 ●당해 대상지에 조성 필요 ●대상지 내부에 공개공지 및 단지 내 조경녹지 계획으로 주민 휴식공간 마련
추가	6. 폐기물	폐기물 성상별 분리처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예상 ●강북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7. 소음진동	규제기준 만족	●공사시 소음·진동영향이 예상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저진동 장비사용

III. 관련도면 : 불임 참조

1.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1:1,200
2.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없음)
4.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5.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 : 생략

V. 열람장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9), 강북구 주택과(☎02-901-6823)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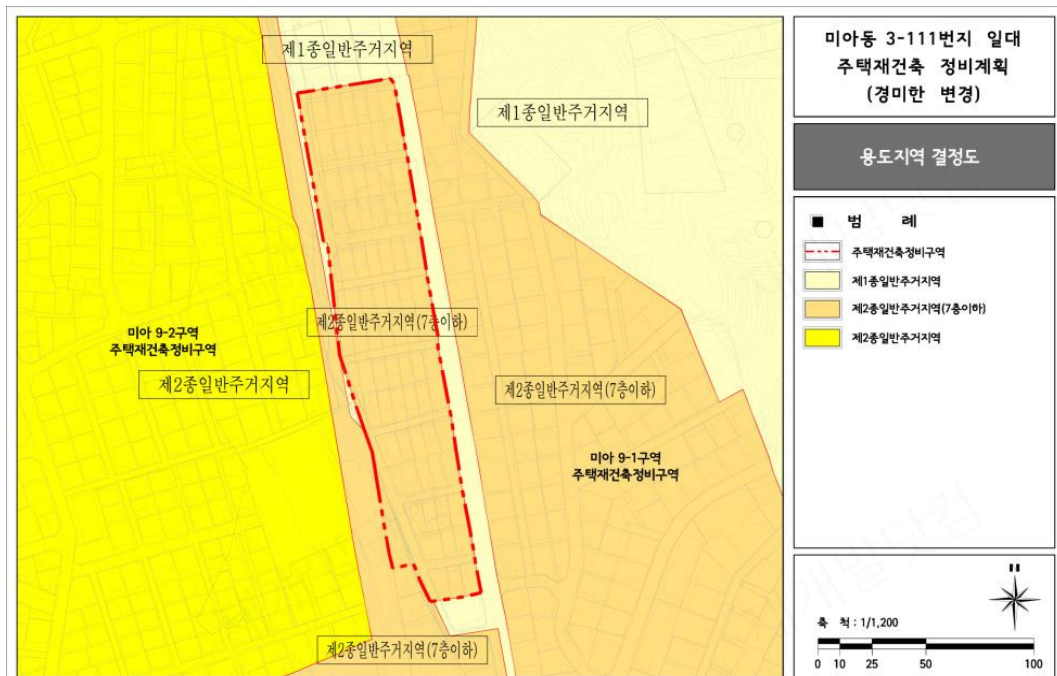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I.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정비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용도지역 결정도(변경 없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없음)



□정비계획 결정도(변경 없음)

